

사회공헌활동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"공익법인"은 종교·자선·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.
- ② "특수관계 공익법인"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 57 조 제 2 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1 항 제 2 호가 적용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.
- ③ "기부금의 출연"은 회사가 공익법인에게 금전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,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·교환·신용공여 하는 행위를 뜻한다.

제 3 조 (사회공헌활동의 범위 및 절차)

- ① 사회공헌활동은 미래세대 육성 및 지원사업, 지역사회발전 참여사업, 생명 나눔 지원사업, 임직원과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 사업, 그 밖에 회사의 사회공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출연의 형태로 운영된다.
- ② 회사는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,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및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공익법인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③ 회사 및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조직 및 기부금의 출연

제 4 조 (조직 및 운영)

- ①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으로서, 회사의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사업운영을 담당한다.
- ② 회사 내 사회공헌활동 담당부서는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.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의 커뮤니케이션 수행,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을 포함한 기부금

출연 공익법인의 선정 및 기부금 규모의 결정, 본 규정에 따른 보고·공시 의무 준수 등 사회공헌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5 조(기부금의 조성 및 출연)

- ① 회사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규모를 결정하며, 임직원 및 회사소속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기부금 출연 공익법인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회사의 사회공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특수관계 공익법인

제 6 조 (특수관계 공익법인 대상 기부금)

- ① 회사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, 기부 대상, 목적 및 기부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이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조건부로 기부금을 출연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 출연을 중단하여야 한다.
- ③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사업으로부터 회사(회사의 계열사 및 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우대를 받는 등 기부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,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부금의 출연을 중단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평가)

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의 적정성 점검 기준 및 평가 절차는 별도의 세칙에서 정한다.

제 8 조(보고 및 공시)

- ① 회사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한 경우,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기부금에 대한 현황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,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음 해 3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 <2014. 3. 14.>

제 1 조 [시행일]

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